

「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성기 의원
- 제안일자 : 2026. 02. 25.
-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2. 제안이유

-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해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비 지급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단체관광 동행, 주말·공휴일 등 해설 시 추가활동비 지급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

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활동비 지원을 통해 해설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, 지역 관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2호 상위법 인용 조문 띄어쓰기 정비
- 안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교통비·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를 지원할 때,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설하는 경우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추가활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~ 다. (생략)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□ 관광진흥법

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1., 2023. 8. 8.>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8.>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 4. 5.]

□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

제15조(활동비의 지급) ① ~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,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달리 지급할 수 있다.